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24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6월 14일

제안자 : 이기동 의원외 4인

□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인 “기금 운영의 성과분석”을 명문화 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안 제6조 “3호”를 “4호”로 하며,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기금운영의 성과분석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“3호”를 “4호”로 하며,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금운영의 성과분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 계획수립 2. 기금운용 결산보고 (신설) 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	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 2.(개정안과 같음) 3.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4. (개정안 3호와 같음)